매일정리노트 1주차 정답 및 해설

01 조세의 의의 및 분류와 체계

01

① ○

❑ **과세요건 : 과세대상, 납세의무자, 과세표준, 세율**
국세나 지방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는데 필요한 요건으로 **과세대상, 납세의무자, 과세표준, 세율로 정하여 법률에** 각 세목마다 정하고 있다.

② ×

❑ **특정목적 사용용도에 따른 조세의 분류 : 보통세와 목적세이다.**
① **보통세** : 특정목적의 제한 없이 **일반적 재정수요를 충당**하기 위한 조세
② **목적세** : 처음부터 조세수입의 **용도를 법률에 정하여 그 규정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는 조세** 즉, 특정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사용목적이 제한된 조세

과세주체	세 목
국 세	교육세, 교통에너지환경세, 농어촌특별세
지방세	지역자원시설세, 지방교육세

• 국세+목적세+부가세 : 교육세, 농어촌특별세
• 지방세+목적세+부가세 : 지방교육세

③ ×
재산세 감면세액에는 부가세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취득세, 등록면허세,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의 20%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된다.

❑ **부가세**

독립세	부가세율 - 부가세목	
	납부세액	감면세액
취 득 세	• 10% 농어촌특별세 • 20% 지방교육세	• 20%의 농어촌특별세
등록면허세	• 20%의 지방교육세	• 20%의 농어촌특별세
재 산 세	• 20%의 지방교육세	-
종합부동산세	• 20%의 농어촌특별세	-
양도소득세	-	• 20%의 농어촌특별세

▩ **취득세 납부세액에 대한 부가세 적용방법**
• 농어촌특별세 : 취득가액에 2%를 적용 하여 산출한 세액의 10%
• 지방교육세 : 표준세율에서 2%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20%
✓ **주택을 유상취득시**
• 지방교육세 : 취득세율의 50%로 산출한 세액의 20%

④ ×
• 지방세 중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인 세목은 지방교육세이다.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이지만 부가세는 아니다.
• 국세 중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인 세목은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있다.

⑤ 국세 중 (상속세)와 지방세 중 (재산세)는 물납이 인정된다.

⑥ ×
• 재산세 물납적용시 부가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.

❑ **물납**

① **적용세목** : 상속세, 재산세
② **신청(납기 10일전까지) → 허가○**
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
③ **물납대상(재산세)** : 관할구역 내 부동산만 가능

❑ **분할납부**

① **적용세목** : 소득세 중 양도소득세, 법인세, 상속세, 증여세, 종합부동산세, 재산세
② **신청(기한 내) → 허가×**

구 분	신청기준 세액	분할납부기간
재 산 세	250만원 초과	2개월 이내
종합부동산세	250만원 초과	6개월 이내
양도소득세	1,000만원 초과	2개월 이내

③ **신청한도**
㉠ **재산세, 종합부동산세**
• 500만 원 이하 : 250만 원 초과액
• 500만 원 초과 : 그 세액의 50% 이하 금액
㉡ **양도소득세**
• 2천만원 이하 : 1천만원 초과액
• 2천만원 초과 : 그 세액의 50% 이하 금액

⑦ ○
• **면세점** : 취득당시 취득한 물건의 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.

⑧ ○

02 세법용어 : 납세자

02

① × : 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다. 징수의무자는 **징수의 편의를 도모**하기 위하여 징수권을 위임하여 대신 납부하는 자를 말한다.

납세자	납세의무자 + 징수의무자
납세의무자	본래, 연대, 제2차, 납세보증인
징수의무자	특별징수의무자, 원천징수의무자

② ○
• **연대납세의무자** : 본래 납세의무자가 납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당해 납세의무와 관계있는 자로 하여금 상호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. ⇨ 처음부터 전체세금을 부담의무가 있다.
• **제2차 납세의무자** :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거나 납부능력이 부족한 경우 본래 납세의무자에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.

03 납세의무의 성립(과세요건 충족)시기

03

① × : 소득을 얻은 때 × ⇨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

✓**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세** :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속하는 달의 말일

② × :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× → 과세기준일(6월1일)

③ ○

④ × : 증여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계약일 × → 증여재산을 받은날

⑤ × : 이를 가산할 국세 또는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

⑥ × : 매년 6월 1일 × → 사유가 발생하는 때

04 납세의무 확정방법과 징수방법

04

❑ **납세의무의 확정방법 ⇨ 과세표준×세율=산출세액**

① 신고주의 : 알지× ⇨ 신고하는 때 확정

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조세

✓ 취득세, 등록면허세,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, 소득세, 부가가치세, 법인세 등이 이에 해당된다.

② 부과주의 : 알고○ ⇨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때 확정

과세주체가 해당 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조세

✓ 재산세,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, 종합부동산세, 상속세, 증여세등이 이에 해당된다.

✓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확정되지만,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.

③ 자동확정 : 성립과 동시에 확정

인지세, 원천징수하는 소득세,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등

① ○ ② × : 부과과세 × → 보통징수 ③ ○

④ × : 원천징수 × → 특별징수

지방세	신고납부, 보통징수, 특별징수
국 세	신고납세, 정부부과과세, 원천징수

⑤ ○

05 세법용어 : 가산세와 가산금

05

① × :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.

• 가산세는 본래의 세금을 추징하는 세금이다.

② × : 100분의 5 × → 100분의 3

③ ○ ④ ○

⑤ × : 100분의 10 × → 100분의 20

⑥ × : 지방세는 75%한도가 있지만 국세는 한도가 없다.

⑦ ○

⑧ × :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.

06 납세의무의 소멸

01 부과의 취소, 제척기간이 끝나는 때, 소멸시효의 완성

02 5년, 10년

03 ③번 04 ⑤번 05 ④번 06 ②번

❑ **납세의무의 소멸사유**

구 분	소멸사유	내 용
직접소멸 (실현)	납 부	과세. 부과된 세액을 국고에 **납입**하는 것
	충 당	① 납부할 국세 등과 국세환급금을 **상계** ② **공매대금**으로 체납액에 **충당**
간접소멸 (미실현)	부과취소	유효하게 행해진 부과처분을 당초 처분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는 처분
	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만료 ⇨ 결손처리 요건이 아님	
	국세징수법의 소멸시효의 완성 ⇨ 결손처리 함	

✓ 부과권 철회·결손처분 및 납세의무자의 사망은 납세의무의 소멸사유가 아니다.

07 부동산 관련 세목 및 기타

01 ④번 : 재산세는 보유단계 세목

02 ③번 :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단계에 적용

03 ④번 :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단계에 적용

04 ⑤번

❑ **당해 재산세** :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한 세목

• 상속세, 증여세, 종합부동산세, 종합부동산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

• 특정부동산의 지역자원시설세, 재산세, 자동차세,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

❑ **부동산관련 세금**

구분	본 세	기 타	
취득 단계	- 취득세 - 등록면허세 - 상속세 및 증여세	- 농어촌특별세 - 지방교육세	- 부가가치세 - 지방소비세 - 인지세
보유 단계	- 재산세 - 지역자원시설세 - 종합부동산세 - 종합소득세(임대사업) - 법인세	- 지방교육세 - 농어촌특별세 - 지방소득세	- 부가가치세 - 지방소비세
양도 단계	- 종합소득세(매매업) - 양도소득세 - 법인세	- 지방소득세 - 농어촌특별세	- 부가가치세 - 지방소비세 - 인지세

• 취득·보유시에만 관련된 세목 : 지방교육세

• 보유·양도시에만 관련된 세목 : 종합소득세, 법인세, 지방소득세

• 취득·양도시에만 관련된 세목 : 인지세

• 취득·보유·양도에 모두 관련된 세목 : 부가가치세, 지방소비세, 농어촌특별세

수고하였습니다. !